법무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8. 26.(금)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책임자	과 장 반재열 (02-2110-4035)
		담당자	사무관 김영오 (02-2110-4045)

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 8. 26.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

□ 6. 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 중 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함

□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붙임1]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붙임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 제 197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 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

○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 5.(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 8. 9.(화), 8. 11.(목)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 8. 19.(금)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8. 26.(금)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가 현황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 개요 1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사증면제 및 무사증 국가 현황('22.9.1.부 112개)**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B-1)

총 66개국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터키)
미주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1개국)	뉴질랜드
아프리카 (3개국)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B-2)

총 46개국・지역	
아시아 (10개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마카오**, **일본**, 쿠웨이트, 홍콩 ,**타이완**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11개국)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오세아니아 (13개국)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랜드(에스와티니), 보츠와나

* 밑줄친 8개 국가는 현재 잠정정지(사증 필요)

* 단, 일본, 대만, 마카오는 8월 1달간 한시적으로 무사증입국 허용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B-2-2) 입국허가 제도 개요**

□ 시행 배경

○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을 통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시범지역으로 개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확보

- '98. 4. 15. 중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제주 무사증입국 허용한 이래, '02. 5. 1.부터 제주도 무사증입국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개별관광)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무사증입국)**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 허용 (제197조 제1항)

○ **(체류지역 확대허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육지)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제198조 제1항)

□ 제주무사증 입국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제주무사증입국 불허 국가(23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체류가능 기간 : 30일

□ 참고사항

○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20. 2. 4.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였다가, '22. 6. 1.부로 재개됨